

의안번호	제 79 호
의결 연월일	2007년 월 일 (제 258 회)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7년 2월 15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
----------	----

제출연월일 : 2007년 2월 15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청구권자의 연령기준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안 제2조 제1항)
-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구성내역 구체화(안 제3조 제2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주민감사청구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 주민감사 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주민수는 20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를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감사와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p> <p>①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20세이상 주민수 100명 이상으로 한다.</p> <p>②(생략)</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p> <p>①----- ----- -----</p> <p>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수 100명 이상으로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구성)</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법관,변호사,대학교수,공인회계사,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p> <p>3.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4. (신설)</p>	<p>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p> <p>3.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 등 감사와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p> <p>4.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p>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중인 사실과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⑤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⑥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⑦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내용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⑧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

⑨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1.27, 2006.1.11>[본조신설 1999.8.3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 (감사청구심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소속 아래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마.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감사 청구요건의 심사
2.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⑥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